KCCS 디플로마코스 Meeting Policy

2012 년 4월 9일

KCCS 의 세칙(4.1 조)과 규정(2.3 조)에 의거한 미팅 폴리시(Meeting Policy)는 아래와 같다.

1. 교수회원의 등록자에 대한 의무

- 1) 마스터 및 정규수련과정에서 교육을 위한 최소 수술 건수의 유지
 - (a) 교수는 1시간-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수술로서 **매일 최소 2 개 이상의 수술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b) 특수분야의 1 건의 수술시간이 5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루 주요 수술 2 건으로 인정한다.
 - (c) 마스터 코스의 월 3일 또는 정규수련과정의 주 3일의 교육에서 최소 총 5개의 주요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 2) 교수의 정보제공 의무
 - (a) 교수는 등록자 수술기록지(log book)에 기재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환자이름 영문이니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차트번호, 성별, 나이, 수술명, 전후 사진)를 제공해야 한다. 단, 전후 사진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의 크기 및 해상도를 조절하여 제공한다.
- 3) 교수의 서명의무
 - (a) 교수는 교육 중 수술기록지 및 교육 후 등록자가 수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학회가 발행하는 경우 서명을 해야 한다..
- 4) 교수의 제공 의무
 - (a) 등록자의 책걸상, 중식 및 수술에 관련된 복장 및 기구의 제공.
- 5) 교수의 시험관 수락의무
 - (a) 교수는 등록자의 DIYS 시험감독의 요청에 수락에 적극 응해야 한다.
- 6) 교수의 교육시간 연기사항의 통보
 - (a) 교수는 병의원 및 환자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술교육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월내에서 스케줄을 연기하거나 추가로 날짜를 지정하여 최소한 1주일 전(국내), 2 주전(해외)에 등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교수의 교육이 미비한 경우
 - (a) 예정된 환자의 수술 연기 및 취소 등으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교수는 해당하는 시간과 교육의 양을 고려한 동영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단, 하루 최소 1건의 주요 수술교육은 필수이며, 이를 충족지 못하여 추가교육이 시행되는 경우 교육시간은 2배로 늘어난다.
 - (b) 예정 교육 기간내에 충분한 교육(수술건수 및 시간)이 미비한 경우 교수는 교육비 제공 및 재임용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c) 적정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록자는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추가적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8) 이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가할 수 있다.

2. 교수의 등록자에 대한 권리

- 1) 교육 거부권
 - (a) 교수는 마스터 및 정규수련과정에서 등록자가 피교육자로서 자질(능력 및 인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인 소견서를 감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교육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i. 소견서가 이사회에 접수되는 즉시 등록자의 교육은 즉시 중단된다. 등록자는 1차에 한하여 소청할 수 있다. 소청에 대한 결과통보는 소청서류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ii. 거부권이 확정되면 등록자는 타교수로부터 해당 기간만큼의 소정의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탈락된 코스의 납입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 iii. 3명 이상의 교수로부터 교육거부권이 발효된 등록자는 그 해 과정에서 탈락되며 다음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 (b) 교수는 핸즈온 코스에서 등록자의 자질이 세칙 4.167 조 1)-(a)에 해당된 경우에 관련 등록자 개인에 대한 교육중단을 선언하고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견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증에 관한 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 (c) 감사위원회는 (a), (b)사항을 심의하여 1 주일 이내에 결과를 교수와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교수와 등록자 상호간의 예절

3-1. 교수의 예절

- 1) 교수의 언행
 - (a) 등록자에 대한 교수의 인성 교육의무는 없으나 미용성형을 전공하는 등록자가 갖추어야 할 예절에 관한 기본적인 인성수련은 권고된다.
 - (b) 상기 (a)항의 이유로 교수는 등록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
- 2) 교육시간 및 내용의 성실함
 - (a) 교수는 예정된 교육에 대하여 시간준수와 내용의 성실함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예를 가진다.
 - (b) 교수는 교육 기간 내 수술환자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교육내용의 사전통보
 - (a) 교수는 해당일 교육에 관련된 논문, 수술환자에 대한 정보 및 수술명 등을 최소 3 일전에 등록자에게 통보함을 권고한다.

3-2 등록자의 예절

1) 등록자의 언행

- (a) 등록자는 다른 동료들을 포함한 관련 인들과 각각의 교수들에 대한 평가 및 교수간 비교적 평가에 대하여 사적으로 논의 할 수 없다.
- (b) 등록자는 교수들의 병 의원과 관련된 고유의 또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외부로 그 내용을 발설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 (c) 등록자는 교수의 교육이 성의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지라도, 교수 및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언행을 통하여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 단, 이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개선사항을 요청 해야 한다.
- (d) 등록자는 환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 중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 (e) 등록자는 교수 병 의원 소속의 직원들과 기본적인 예로서 언행에 유의하여, 이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 (f) 상기 (a), (b) 및 (c), (d)항의 불성실한 이행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 (g) 특히 (d)의 위반으로 인한 환자와의 분쟁 발생시 등록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2) 등록자의 피 교육시간 엄수 및 수술기록지 작성

- (a) 등록자의 교육시간은 교수 병 의원의 업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준한다.
- (b) a) 항에 의할지라도, 해당일의 교육이 끝났다는 교수의 선언이 더 유효하다.

- (c) 등록자는 등록자 병원환자 및 가족의 생명 위독 또는 사망 등의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일의 교육을 도중에 중단 또는 일정을 변경 할 수 없다.
- (d) 등록자는 학회가 제공한 기본서식(수술기록지)에 의거하여 교육이 종료됨과 동시에 내용을 기술하여 교수로부터 사인을 받아 보관한 뒤 최종 교육 종료 시 학회에 제출 해야 한다.

3) 등록자의 교수 지시사항 엄수

- (a) 교수의 인성교육에 순응하며 따라야 한다.
- (b) 등록자는 교육시간 이내에 의료 및 의학과 관련된 교수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 (c) 등록자는 교육시간 이내에 교수 병 의원의 고유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 (d) 근무시간 내에 병 의원 내에서 금연, 금주한다.

4) 등록자의 교육내용 및 일정 변경 확인

(a) 등록자의 교육기간의 선택 요령

한국 내 미용성형의 특성상, 주요 미용성형 수술 중 얼굴분야는 12월-2월 사이에, 체형분야는 4월-6월 그리고 피부 레이져는 10월-2월 사이에 환자가 많으므로 이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b) 등록자의 교육일정변경 논의
 - i. 등록자는 양가부모의 상, 친형제의 상, 또는 아내와 친 자녀의 상을 당하였거나 이들의 중환자실이상의 입원으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일정변경을 교수와 논의할 수 있다.
 - ii. 상기 (i) 사항으로 변경된 내용은 사무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